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비매품/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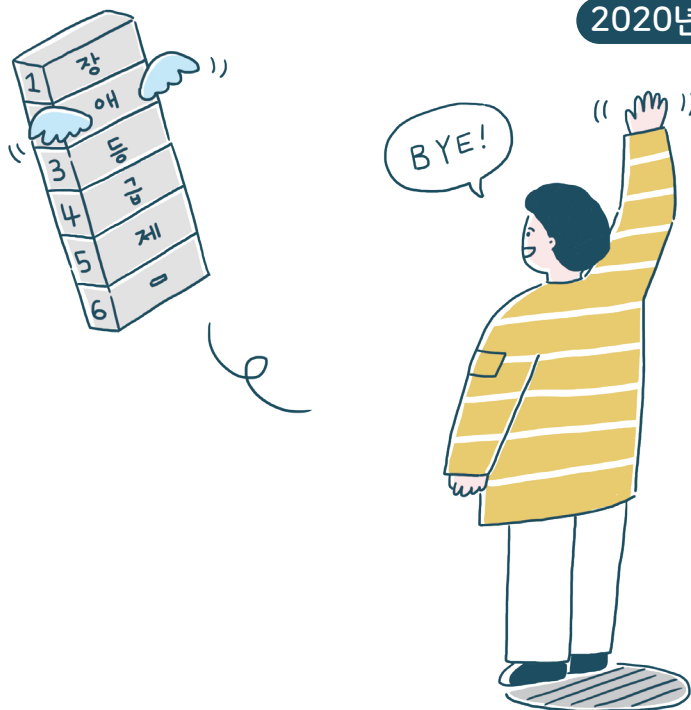
9 788969 213891

ISBN 978-89-6921-389-1

알기쉬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2020년판





알기 쉬운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

내용구성

I.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안내	7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의의	8
- 주요 제도 변경 내용	12
 II. 주요 복지서비스 안내	 21
 부록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FAQ	123
 *서비스 찾아보기 (가나다순)	 147



I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안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의의



폐지 배경

- 장애등급제는 1988년에 도입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하지만 모든 장애인을 하나의 기준, 즉 의학적 판정으로만 심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한 명 한 명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게 됩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적용 범위를 매년 조금씩 확대하여 개인별 맞춤 서비스가 되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의 등록)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7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주요 내용

- 장애등급제가 없어집니다.

의학적 상태를 기준으로
1급부터 6급까지 나뉘던 장애등급은 없어지고,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합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됩니다.

주요 서비스의 이용 자격을 확인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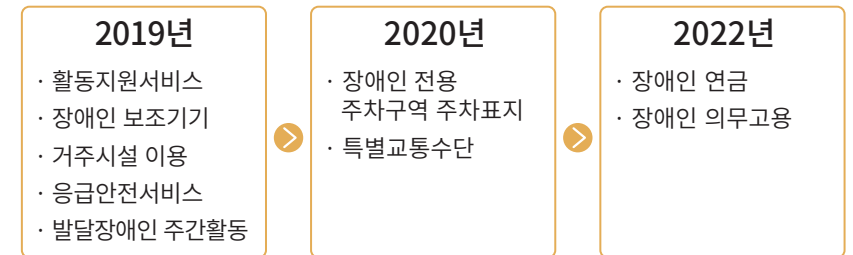
-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읍·면·동에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 서비스를 연계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합니다.
시·군·구에서는 장애인 지원을 전담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단계적 확대 방향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예산이 많은
서비스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맞춤형 전달체계를 강화합니다.

지역에 있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찾고,
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찾아가는 상담 인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과 민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 서비스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장애인과 가정을 지원합니다.



주요 제도 변경 내용



장애인 등록과 심사

-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6개의 장애등급 대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뀝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확대되는 2022년까지 장애인연금 등 기존 서비스 지원을 위해 '추가 심사 사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경된 내용 비교해 보기

'19년 7월 전	⇒	'19년 7월 이후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 정도
1급, 2급, 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 5급, 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급 외		장애 정도 미해당
-	추가 심사	보행상장애/장애인연금/장애인고용 장애정도 해당 여부
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서비스 재판정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명칭) 복지카드 (표기내용) 장애등급, 유효기한	장애인 등록증	(명칭) 복지카드 (표기내용) 장애정도 ¹⁾ , 유효기한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경증'으로 표기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새로 생겼어요!

- 장애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욕구, 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 만 19세 연령 기준으로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로 구성됩니다.
(’20년 10월 30일 기준)



단계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내용 살펴보기

구분	'19년 7월 1일 (1단계: 일상생활)	'20년 10월 30일 (2단계: 이동지원)
대상 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활동지원, 보조기기) 모든 장애인 (응급안전) 활동지원수급자 (거주시설) 변경없음 (발달장애인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보행상장애 미해당 장애인 중 중복장애인이 이동지원서비스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 하였으나 부적격한 경우 * 16p tip을 참고하세요.
조사대상 유형	(아동) 만 19세 미만: 6세~18세 (성인) 만 19세 이상: 19세~64세	(아동) 만 19세 미만: 6세~18세 (성인) 만 19세 이상: 19세~64세
조사 지표의 구성	(기본조사) 아동27개, 성인36개 - 기능제한: 식사, 목욕 등 - 사회활동: 학교, 직장생활 등 - 가구환경: 독거, 취약가구 등 (생활환경)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	(아동) 4개 (성인) 7개
조사 결과 활용	(활동지원, 응급안전) 종합조사점수 활용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일부지표를 최소기준으로 활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종합 조사 결과 활용

tip

이동지원 서비스종합조사 신청은 누가할수 있나요?

- 이동지원 서비스종합조사 신청 대상

이동지원 서비스종합조사의 대상자는 현행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이 이동지원서비스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 하였으나 부적격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보행상 장애 미해당 장애인’ 확인 방법

장애정도 결정 당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은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의 추가심사결과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의 미해당에 ‘✓’표시가 되어있으면 해당됩니다.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해당 [] 미해당 [✓]

* 2019년 7월 이전에 장애정도 심사를 받은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제 호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1. 성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1992. 3. 5.)

2. 주소(소재지):

3. 추가심사결과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해당 []	미해당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해당 []	미해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관련고시에 의거한『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읍면동장

발급일자 : 2019. 0. 0.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

- 행복e음을 통해 장애정도, 생활환경 등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가 바뀌어 서비스 신청, 의뢰가 통합됩니다.
-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은 탈락된 이후라도 다시 이용할 수 있을지 관리합니다.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지금은 자격이 안 되지만 소득이나 조건이 바뀌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다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 건강, 직업지원 등의 서비스는 단순히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건소, 고용플러스센터,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의뢰합니다.
-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합니다.
-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 시·군·구청의 공무원과 민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서비스를 찾고 연계합니다.

변경된 내용 비교해 보기

’19년 7월 전	⇒	’19년 7월 이후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 제공	초기 상담	- 맞춤형 서비스 안내문 제공 - 상담 시뮬레이션 활용
감면 등 대행신청 8개	통합 신청	- 대행신청 1개 추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 고용, 의료서비스 3개 기관 의뢰
서비스 단순 안내	타기관 서비스 연계	대상기관 (장애인고용공단, 보건소)에 의뢰
빈곤계층 중심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 장애인복지사각지대 개념 도입 - 장애인의 적극급여 누락 안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금액 변경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미신청자 누락서비스 연계> - 진단비, 검사비 등 각종 서비스 <수급탈락자 사후관리>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의 선정 기준금액 변경, 사망 등 가구원수 변경 - 장애인활동지원의 독거가구
지자체 등의 상황에 따라 실시	동행상담	(대상)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시·청각 중복장애인 등 (동행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
없음	민관 협의체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례관리 강화



II

주요 복지서비스 안내





II. 주요 복지서비스 안내

1. 소득지원
2. 간접소득지원
3. 건강 및 의료지원
4. 고용지원
5. 주거지원
6. 일상생활지원
7. 보육 및 교육 지원
8. 문화 및 여가 지원
9. 안전 및 권익 지원

* 장애등급제 폐지 후 기준 변동이 있거나 용어변동이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소득지원

1-1. 장애인연금

지원받는 사람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받습니다.

*2020년 선정금액 기준
: 단독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지원받는 내용

구 분		계	기초	부가
기초 (생계·의료급여)	18~64세	380,000	300,000	80,000
	65세 이상	380,000		380,000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370,000	30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74,760	254,76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1-2. 장애수당

지원받는 사람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어야 합니다.

지원받는 내용

-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한 달에 4만 원을 받습니다.
- 보장시설에 사는 사람은 한 달에 2만 원을 받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1-3. 장애아동수당

지원받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어야 합니다.

지원받는 내용

구 분	지원 금액
기초(생계, 의료) 중증	한 달에 20만 원
기초(주거, 교육) 중증	한 달에 15만 원
차상위 중증	한 달에 15만 원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경증	한 달에 10만 원
차상위 경증	한 달에 10만 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한 달에 7만 원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한 달에 2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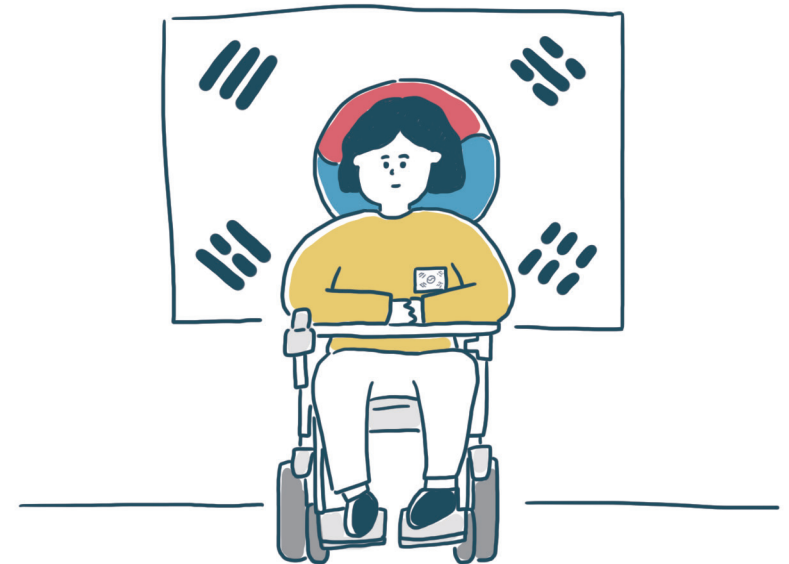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1-4. 대한민국 체육 유공자 지정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대한민국 체육 유공자가 되어 연금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





2. 간접소득지원

2-1.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습니다.
*요리할 때 쓰는 도시가스나 개별 난방용으로 사용할 때만 할인됩니다.
- 문의 및 신청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2-2.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전기요금을 할인받습니다.
*여름(6월~8월)에는 한 달에 2만 원, 그 외의 계절에는 한 달에 1만 6천 원을 할인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3)

2-3.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지역난방 에너지 요금을 지원받습니다.
*한 달에 5천 원 정도 지원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2-4. 시·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지원받는 사람**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이 지원받습니다.
- 입소 장애인을 위해 TV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TV 수신료 전체를 면제받습니다.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만 됩니다.
- 문의 및 신청** - 한국전력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2-5. 이동통신요금 감면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가입비를 면제받습니다.
- 기본료와 통화료의 35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하며, 월 최대 1만 5백 원 감면가능합니다.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이용하는 통신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2-6.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한 달 인터넷 이용료의 3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이용하는 통신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2-7. 유선통신 요금 감면

- | | |
|----------------|--|
| 지원받는 사람 | -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이 지원받습니다. |
| 지원받는 내용 | - 한 달 통화료의 5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 (최대 3만 원까지)
*휴대폰에 거는 전화요금은 한 달에 3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 (최대 1만 원까지)
*114에 거는 전화요금은 무료입니다. (자동연결 서비스는 무료 아님) |
| 문의 및 신청 | - 이용하는 통신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2-8.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 | |
|----------------|---|
| 지원받는 사람 |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차량이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장애인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명의일 때 가능합니다.
(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형제, 자매)
*차량은 2천cc 미만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명 이상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만 가능합니다. |
| 지원받는 내용 |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
*일반차로는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하이패스도로는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지문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감면 단말기 지문입력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2-9.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지원받는 내용 - 철도

구 분		지원 내용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무궁화, 새마을, KTX에 대해 50퍼센트 할인을 받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무궁화 열차 50퍼센트, 새마을과 KTX 열차는 주중에만 30퍼센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현장에서 표를 살 때는 복지카드를 보여줍니다. 인터넷이나 앱으로 예매할 때에는 중증과 경증 중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고 예매합니다.	

- 지하철

구 분	이용 방법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개찰구에 카드를 찍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	창구나 발매기에서 1회권을 구입하여 이용합니다. (카드 보증금을 500원 내야해요.)

문의 및 신청 - 철도 : 코레일 (1544-7788)
- 지하철 : 각 지역 지하철 담당 공사

2-10.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지원받는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수수료의 5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수수료의 3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

문의 및 신청 - 교통안전공단

2-1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받는 사람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원받습니다.
*대부분 50퍼센트 할인이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할 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의 및 신청 - 문의 : 시·군·구청
- 신청 : 공영 주차장 정산소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2-12. 국내여객공항 이용료 감면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 (보호자 1명까지 할인 가능)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최대 30퍼센트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 *여객 회사 및 목적지에 따라 할인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할 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보여줘야 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각 여객 회사

2-1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받는 사람**
-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 받습니다.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합니다.
 - *대여의 목적이 생업, 경제활동(생업이나 출퇴근 목적의 자동차 구입 등)에 관련되어야 합니다.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지원받는
내용

구분	대상 기준	지원 내용
무보증 대출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백만 원 이상	한 집당 1,20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단 특수설비를 부착하는 자동차는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보증 대출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백만 원 이상	한 집당 2천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담보 대출	-	한 집당 5천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이자 : 최고 3퍼센트

*상환방법 : 처음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나눠서 갚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14.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전체의
15퍼센트를 공제받습니다.

문의 및
신청

- 국세청 (126)

2-15. 장애인 보험료 공제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지원받는
내용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15퍼센트를
공제받습니다.
(1년에 100만 원까지 가능)

문의 및
신청

- 국세청 (126)

2-16.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 공제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곳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 특수교육비 전체의 15퍼센트를 공제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국세청 (126)



2-17.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차량이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장애인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명의일 때 가능합니다.
 - (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형제, 자매)
 -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잔존년도만큼 부과합니다.
- 지원받는 내용**
-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퍼센트까지 가능합니다.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 및 신청**
- 국세청 (126)

2-1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차량이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장애인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명의일 때 가능합니다.
(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형제, 자매)
- *차량은 2천cc 미만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명 이상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오토바이만 가능합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시·군·구청의 세무과

2-19.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시·군·구의 차량등록 기관



2-2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 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번호	품목
1	목발
2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3	보청기
4	성인용 보행기
5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6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7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8	시각장애인용 음성 독서기
9	시각장애인용 특수 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10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1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 단말기
12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13	의수족

번호	품목
14	인공후두
15	장애인용 기저귀
16	점자판과 점필
17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8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9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20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21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22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23	화면해설방송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24	휠체어

문의 및 신청

- 국세청 (126)

2-21. 소득세 공제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 이 공제를 받을 때 장애인일 경우 연령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문의 : 국세청 (126)
- 신청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2-22. 상속세 상속공제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상속하는 사람과 상속받는 사람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이어야 합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상속하는 사람 및 동거가족인 등록 장애인의 상속세를 공제해 줍니다.
- 문의 및 신청** - 관할 세무서

2-23.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 2)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 합니다.
 - 3) 신탁 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 대하여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위의 1), 2), 3)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관할 세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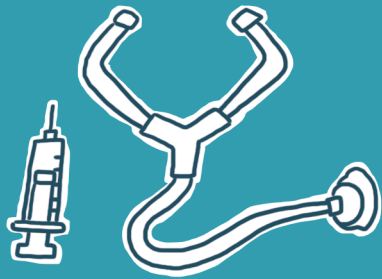
2-24.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받는 내용**
 - 「관세법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 예) 기립 훈련기, 장애인용 기저귀, 욕창예방용구 등
 - 재활병원에서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통관지 세관
 - (수입 신고할 때 관세 면제를 신청합니다.)

2-25.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원받는 사람**
 -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3. 건강 및 의료 지원

3-1. 장애인의료비 지원

- | | |
|---------|---|
| 지원받는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만성질환이나 18세 미만의 장애인) |
| 지원받는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나 전체를 지원받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1차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 부담금 750원 일괄 지원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 부담금 15퍼센트 지원
(차상위 14퍼센트, 암환자 5퍼센트, 입원 10퍼센트 등 / 식대는 미지원) |
| 문의 및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부담금 사전 차감) |

3-2.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원받는 사람**
- 신규 등록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정신장애인 : 4만 원
그 외 장애인 : 1만 5천 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3-3.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적용



- 지원받는 사람**
- 건강보험 :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어야 합니다.
 - 의료급여 :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어야 합니다.
 - *자세한 대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과 장애인보장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받는 내용

구분	지원 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의 가격에 대해 90퍼센트까지 지원받습니다. *차상위는 100퍼센트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의 가격에 대해 100퍼센트 지원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의료급여 : 시·군·구청

3-4.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인고용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직업생활 또는 출퇴근 차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장애인고용공단

3-5. 보조공학기기 지원 (공무원)

-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인고용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공무원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장애인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시·군·구청

3-6.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지원받는 사람 - 소득이 낮은 청각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용과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3-7.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받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 아동이어야 합니다.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 *장애 등록이 안 된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원받는 내용**
-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한 달에 14만 원~22만 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3-8. 지역사회중심재활(CBR)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지원받습니다.
 - 재활운동, 적응 프로그램, 교육 및 2차 장애 관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

3-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지원받는 사람**
-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캠프, 여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1명당 1년에 최대 24만 원까지 가능)
 - 캠프나 여행 중 돌보미를 지원받습니다.
(발달장애인 2명당 돌보미 1명)

- 문의 및 신청**
- 지역의 사업수행 선정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1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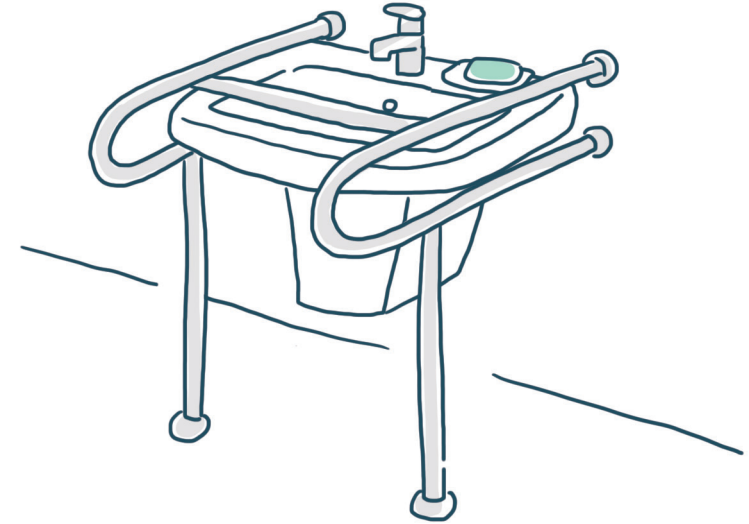
지원받는 사람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부모나 보호자가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상담에 필요한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1인당 한달에 16만 원까지 가능)
- 한 달에 3~4회 이용할 수 있고,
한 번에 50분~100분 이용 가능합니다.
*기본 1년 이용 후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3-11.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지원받는 사람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발달·언어장애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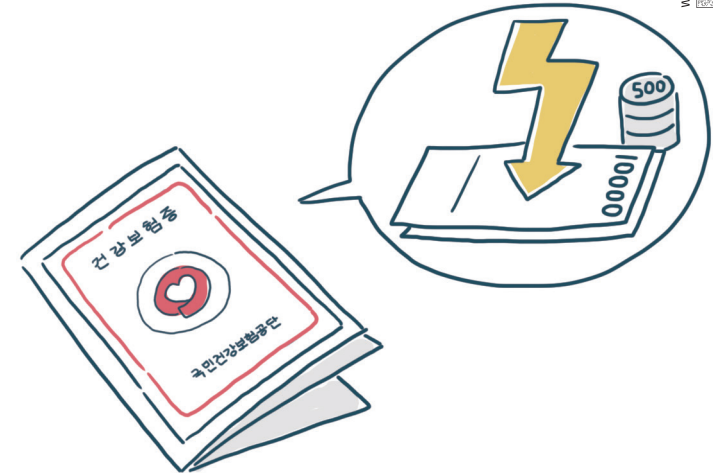
지원받는 내용

지원품목	장애유형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심장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음성시계 / 녹음 및 재생장치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신호표시기 / 진동시계	청각
헤드폰(청취증폭기)	
보행차 / 좌석형 ·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 이동변기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전동침대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뇌병변·지적· 자폐성·청각·언어
대화용장치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3-12.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받는 사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지원받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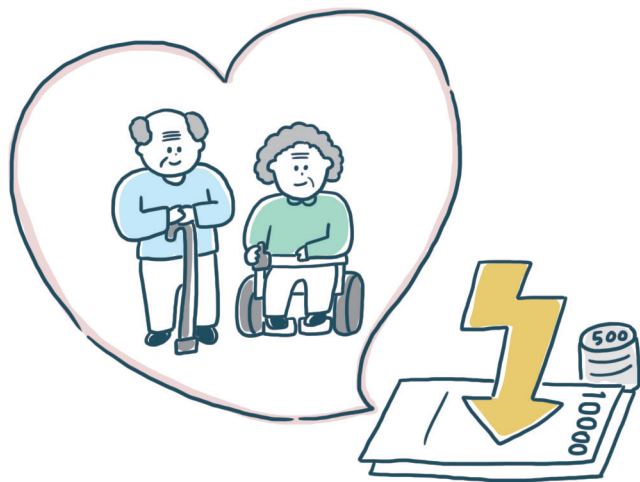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험료의 3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보험료의 2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

문의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3-13.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보험료의 3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3-1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지원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돌봐 줄 가족이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시설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X1) 점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 지원받는 내용** -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살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시청·구청·군청

3-15. 예방접종 피해 보상



지원받는 사람 - 예방접종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상금의 100퍼센트를 지원받습니다.
-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보상금의 55퍼센트를 지원받습니다.

문의 및 신청 - 보건소

3-16. 구강 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지원받는 사람 -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정신·지적·자폐성·뇌병변·뇌전증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구강 진료비의 30퍼센트를 지원받습니다.
-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강 진료비의 10퍼센트를 지원받습니다.
*구강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돈(비급여)만 지원합니다.

문의 및 신청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3-17. 국가 유공자 의료 급여



지원받는 사람

- 장애를 처음 등록하거나 재판정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기존 등록 장애인은 원래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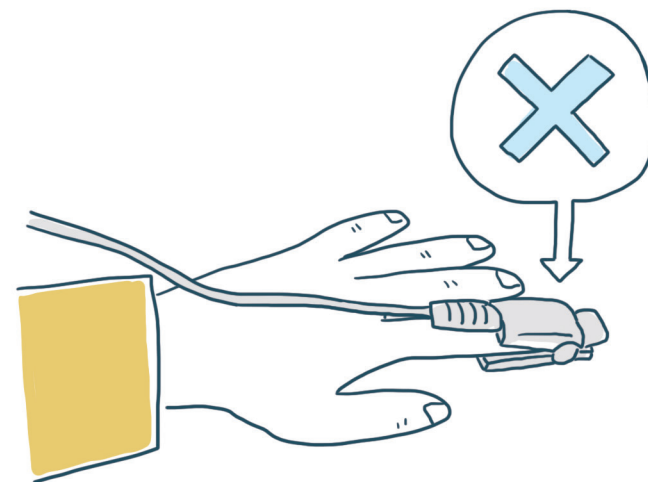
- 관련한 법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관련한 법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문의 및 신청

- 보훈청

3-18. 장애인 산소치료 영양비 검사 면제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장애인 중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람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산소포화도 검사를 받지 않고도 영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3-19. 장애 검사비 지원



지원받는 사람

- 기존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다시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어야 합니다.

지원받는 내용

- 검사하는 데 드는 돈을 지원합니다.
- 가장 많이 지원받을 경우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4. 고용 지원

4-1.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지원받는 사람** -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1순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처음 참여한 사람
 - *2순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성장애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지원받는 내용** - 공공형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4-2.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받는 사람**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가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강화합니다.

*의무고용률 : 정부, 공공기관은 3.4퍼센트, 민간 기업은 3.1퍼센트 (2019년 기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어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2020년 발생분부터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문의 및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3.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 지원받는 사람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훈련수당, 사업주 보조금, 훈련지도원 수당 지급
- 문의 및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4. 중증장애인 인턴제

- 지원받는 사람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중증장애인을 인턴 또는 정규 채용할 때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5.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금

-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1달 넘게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6. 근로지원인 제도

-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업무수행을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습니다.
*장애인이 시간당 3백 원의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7. 고용관리 비용지원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인고용법상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1명에서 5명까지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이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고용관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문의 및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8.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인사혁신처



4-9.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업무 수행을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인사혁신처

4-10. 국가직 5, 7급 공채 영어검정시험 대체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국가직 5급, 7급 공채 영어시험 볼 때 듣기 시험을 보지 않고 별도의 기준 점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4-11.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사업

지원받는 사람 - 저소득층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창업하는 가게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습니다.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문의 및 신청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4-12.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지원받는 사람 - 만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직업적응훈련수당을 한 달에 10만 원 지원받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4-13. 취업알선 지원

지원받는 사람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고용을 원하는 회사를 연계합니다.

문의 및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읍·면·동 주민센터

4-14.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특례

지원받는 사람 -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장애인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은 2배로 고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2명 고용 시 장애인을 4명 고용한 것으로 인정

문의 및 신청 - 고용노동부

4-15. 북한이탈주민 취업 보호 기간 연장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취업하는 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1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는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4-16. 국가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편의 제공



지원받는
사람

- 국가 공무원,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을 보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5. 주거 지원

5-1.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지원받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배우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청약저축 금액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알선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시·도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5-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어야 합니다.

지원받는 내용 - 농어촌에 사는 장애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 안에 편의시설을 만들어 줍니다.
*한 집당 380만 원 지원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5-3.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받는 사람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받는 내용 - 매달 내는 시설 입소 비용 중
28만 6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시·군·구청



6. 일상생활지원

6-1.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받는 사람 -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장애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습니다.

*이동 편의, 학습지원, 수화통역, 속기 등 지원

문의 및 신청 - 각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학생처

6-2.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우선 지원

지원받는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용의
80퍼센트를 지원받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90퍼센트 지원

대상	이용방법
시각장애인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6-3. 특수학급 보조인력 배치

- 지원받는 사람** - 시각, 청각, 지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 의사소통, 학습,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수업 들을 때 특수교육보조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 문의 및 신청**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

6-4.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 지원받는 사람**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난청노인이 지원받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 지원받는 내용** - 청각장애인 :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 :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 :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 문의 및 신청** -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8322)

6-5. 장애인 방송 시청 지원

- 지원받는 사람**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자막방송, 화면 해설방송, 수화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제작하도록 지원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EBS 교육방송을 자막, 화면해설이 들어가도록 재제작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자막, 음성해설이 들어간 방송프로그램 재제작
- 문의 및 신청** - 시청자미디어재단

6-6. 사랑의 그린PC 보급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중고 컴퓨터를 지원받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6-7. 활동지원사를 둘 수 있는 장애인 후보자의 범위

지원받는 사람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인 청각, 언어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그 외의 장애유형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가능

지원받는 내용 - 선거운동을 할 때 1명의 활동지원사를 둘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8.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지원받는 사람 - 여성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여성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100퍼센트 이내이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만 가능

지원받는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가사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지원받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시·군·구청



6-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지원받는 사람

-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보행상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보행상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으면 지원 받습니다.
- 주민등록상 장애인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할 때도 지원받습니다.
(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 보행장애가 있는, 국내 거주 신고를 마친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도 지원받습니다.
(관련 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출입국관리법)

지원받는 내용

-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습니다.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차량에 탔을 때만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6-10. 특별교통수단



-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상의 보행상 장애인 중 시·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상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 지원받는 내용**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6-11.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받는 사람**
- 만 6세부터 만 64세까지의 장애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 지원받는 내용**
- 한 달에 81만 원부터 6백 48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 *장애 정도, 사는 환경에 따라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지원금: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부재에 따라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7. 보육 및 교육 지원

7-1. 아이돌보미 우선 지원

-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찾아가는 양육서비스’를 우선 지원받아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7-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지원받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둔 가족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장애아동의 집 또는 돌보미의 집에서 아이를 돌봐줍니다.
*1년에 600시간까지 지원 가능
-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7-3.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원받는 사람** - 서비스에 따라 소득이나 나이 등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장애인 산모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운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7-4.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받는 사람** - 장애 등록을 한 만 12세까지의 장애아동이 지원받습니다.
-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 3세~만8세 장애아동은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 *종일반 : 한 달에 47만 8천원
방과 후 : 한 달에 23만 9천원
만 3세~5세 누리장애아보육 : 한 달에 47만 8천원
-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7-5. 장애아동 양육수당

- 지원받는 사람**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까지의 장애아동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0세~35개월 : 한 달에 20만 원
36개월~86개월 미만 : 한 달에 10만 원
-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7-6. 언어발달 지원

- 지원받는 사람** -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이 지원받습니다.
*부모님 (조손 가정의 경우 조부모) 중 한 명이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지적, 자폐성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 지원받는 내용** - 한 달에 16만 원~22만 원의 언어재활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이용 가능
-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7-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받는 사람** - 출산, 유산, 사산을 한 여성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여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 된 아이를 유산, 사산한 경우는 제외
- 지원받는 내용** - 태어난 아이 1명당 1백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유산, 사산된 아이도 포함
-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7-8.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 지원받는 사람** - 집에 자녀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자녀가 다른 집 아이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어린이집 및 임신육아종합포털사이트

7-9. 장애인 자동차 운전교육 지원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나 면허시험장에서 운전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10시간
- 문의 및 신청** - 면허시험장 또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

7-10. 정보화 방문교육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강사가 집으로 찾아와 컴퓨터 사용 방법을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문의 및 신청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화, 홈페이지 모두 가능)



8. 문화 및 여가 지원

8-1. 자연휴양림 /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까지 가능
- 지원받는 내용** -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 복지카드 제시

8-2. 국공립공연 관람료 할인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까지 가능
- 지원받는 내용** - 국립공연장,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50퍼센트 할인받습니다.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문의 및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 복지카드 제시

8-3.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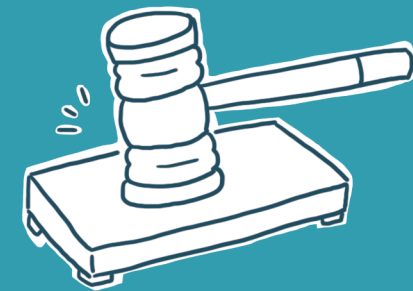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고궁, 능원,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미술관, 국립공원, 국립공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 복지카드 제시

8-4. 문화바우처사업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 지원받는 내용** - 문화이용 바우처 1매를 1인당 1년에 9만 원 지원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8-5.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까지 가능
- 지원받는 내용** -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기타 비용을 할인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 복지카드 제시



9. 안전 및 권익 지원

9-1. 시각장애이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 지원받는 사람 - 시각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점자가 들어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9-2.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질서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의 5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시·군·구 또는 해당 행정청

9-3. 특허출원료/기술평가청구료 감면

-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특허를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를 면제받습니다.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권리 확인 심판 시 청구료의 7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특허청



9-4.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지원받는 사람** -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이하의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구조를 하기로 결정한 사건만 가능
- 지원받는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소송할 때는 법원에 내야 하는 모든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 대리, 무료 형사변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 가능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장애인이 부담
- 문의 및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9-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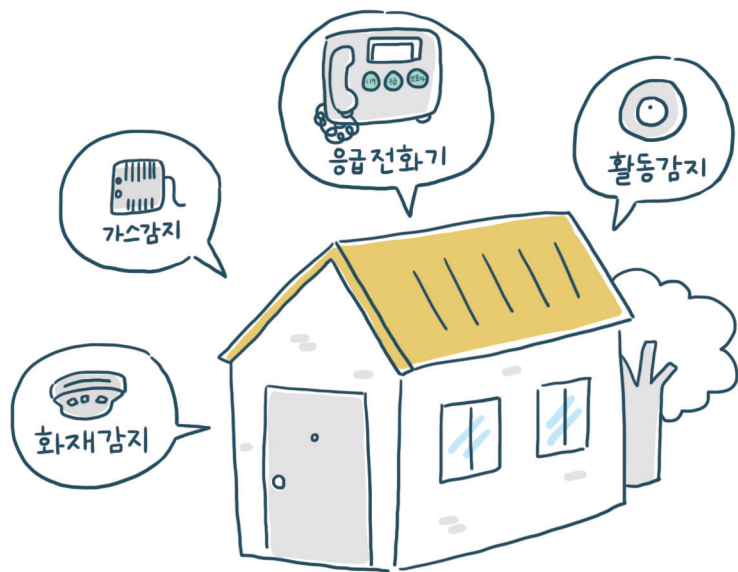


- 지원받는 사람** - 가정법원으로부터 공공후견인 선임을 받은 사람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점자가 들어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공공후견 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발달장애인 1명당 활동비 15만 원 지원하되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
(1명 : 15만 원, 2명 : 30만 원, 3명 : 40만 원)
- 문의 및 신청** - 공공후견법인

9-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 지원

- 지원받는 사람** -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등록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 지원받는 내용**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청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청구 1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9-7.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많으면, 혼자 사는 등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선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불이 나는 등 위험할 때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집 안에 응급전화기, 화재센서, 가스센서를 설치합니다.

문의 및 신청 - 응급안전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9-8. 장애인 전기 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



지원받는 사람 -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일반 전기설비가 불편하거나 위험하여 응급조치를 요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무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1588-7500)

9-9. 근로능력평가 면제



지원받는 사람 - 장애를 처음 등록하거나 재판정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기존 등록 장애인은 원래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9-10. 의료분쟁 조정의 직권 개시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의료사고(장애발생, 사망 등)가 발생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소송을 하지 않고 의료사고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문의 및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9-11. 점자형 선거공보/주민소환 투표공보/ 주민투표공보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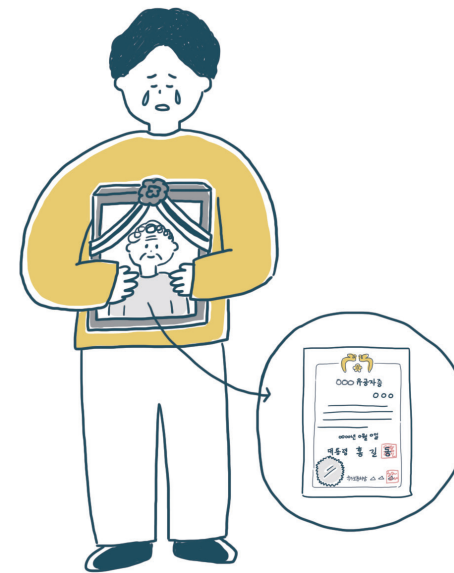


지원받는 사람 - 시각장애인 중 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람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선거, 국민소환투표, 주민투표 할 때 점자로 된 공보물을 제공받습니다.

문의 및 신청 - 선거관리위원회

9-12.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 능력 없는 장애인 인정



지원받는 사람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생활·부양 능력 평가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지원받는 내용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문의 및 신청 - 국가보훈처

9-13. 5.18 민주 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 능력 없는 장애인 인정

지원받는 사람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생활·부양 능력 평가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지원받는 내용 - 교육, 취업, 의료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국가보훈처



9-14. 장애인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인 중 군대에 가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9-15. 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애 등록시 신체검사 면제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체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군대에 가기 위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9-16.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 검사 유예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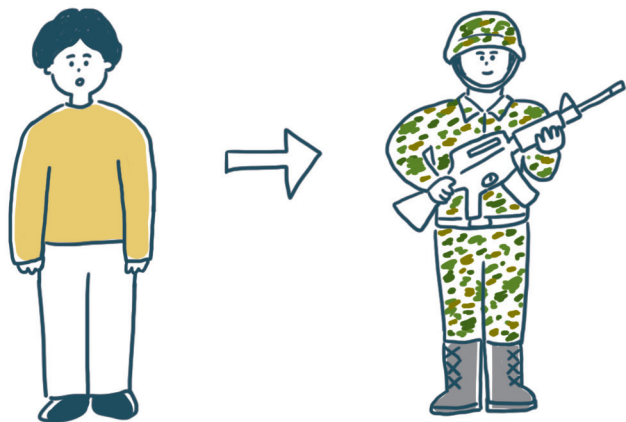
지원받는 내용 - 장애 정도 재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군대 가기 위한 검사 날짜를 뒤로 미뤄줍니다.

9-17. 중증장애인의 병역면제 및 제2 국민역 처분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인 중 군대에 가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원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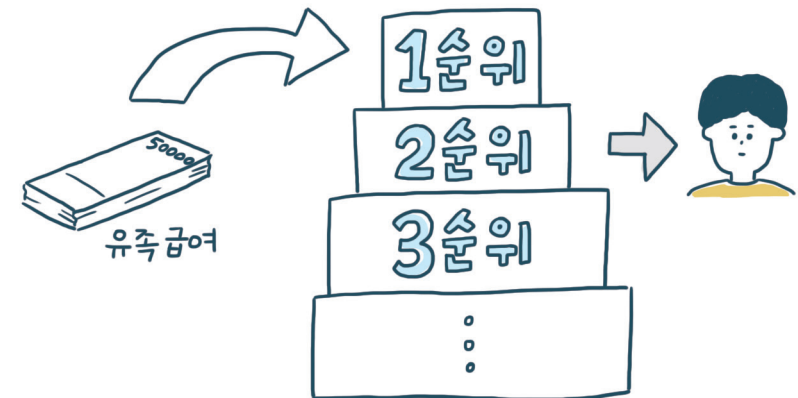
지원받는 내용 -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군대를 가지 않거나 민방위 군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병무청



- ☒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 민방위 군무를 합니다.

9-18. 산재보험 유족보상의 연금수급자격 기준



지원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내용 - 근로자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죽었을 때 배우자, 형제·자매, 할아버지·할머니, 손자·손녀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를 받는 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 장애인 가족이 2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근로복지공단



부록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FAQ

1. 제도개편 일반

Q1 장애등급제 폐지는 왜 하나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인 장애 등급(1급~6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들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욕구 및 생활실태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Q2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째, 장애인 등록은 유지됩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장애 정도를 판정하고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전환됩니다. 획일적 기준

적용의 원인으로 지목된 종전 1~6등급의 장애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셋째,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보다 세심하게 고려합니다. 장애정도가 단순화된 대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하여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와 생활실태 등을 보다 꼼꼼히 조사하고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장애인 사례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위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찾아가는 상담 또는 동행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병행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마련된 바,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2. 장애정도의 구분

Q1

이미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장애정도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1~3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재판정 기한이 설정된 분들은 재판정 시기에 장애정도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Q2

장애인등록증의 장애등급 표기방법 및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명칭은 ‘복지카드’로 유지하고 장애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계획입니다.

Q3

언제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복지카드가 발급되나요? 그리고, 기존 복지카드를 가진 장애인들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9.7.1.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다만,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며,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장애정도’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Q4

2개 이상의 장애를 지닌 경우 장애정도 상향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지닌 경우 중복합산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Q1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생활실태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의학적 평가 중심의 기존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Q2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어디에서 신청 하나요?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시 담당 공무원에게 종합조사 의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Q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누가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Q4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서비스와 관련한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와 이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있으며, 각각 종합조사의 조사표는 만 19세를 기준으로 성인 용과 아동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5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같은 5가지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의 결과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2가지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가 적용됩니다.

Q6

과거 인정조사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인정조사는 1~3급 장애인의 신체·정신 기능 상태 및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만을 조사하였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모든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뿐만 아니라, 보조기기교부, 거주시설입소, 응급안전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등 적용 영역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됩니다.

4.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Q1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무엇인가요?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등급(의학적 판정)이 아닌 개별적 욕구 및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체계입니다.

Q2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의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보완하는 절차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 판정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3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복장애인입니다.

Q4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에서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신청 접수 후 시·군·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를 의뢰하게 되고, 공단은 방문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합니다.

Q5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유형별 이동지원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소견서 제출의무가 있는 장애유형(시각·지체·뇌병변)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해당하는 장애유형의 소견서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단,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진단서 및 소견서 대체 가능합니다.

장애유형별 제출서류

장애유형	제출 자료
지체장애	이동지원종합조사용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변장애	이동지원종합조사용진단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시각장애	이동지원종합조사용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기타 12개 장애유형	이동지원종합조사용진단서

*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5.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다양한 활용

Q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시설 입소가 가능한 시설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외 거주시설(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기존 그대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Q2

의료급여 보장구지원과 보험급여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교부 품목의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중복되지 않은 품목은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요양·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대상이 바뀌거나,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기존과 동일하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독거가구,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중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6. 장애인활동지원

Q1 활동지원서비스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했고, 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였으며, 급여량에 대한 월 상한액 적용 등으로 본인부담금도 함께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는 장애 상태와 삶의 여건, 서비스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지원 급여구간을 4개 구간에서 1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개별 상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전에 비해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 시 일부는 서비스 탈락 및 감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량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유예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향후 2년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Q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만 6세~65세 미만의 장애등급 1~3급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19.7. 이후에는 만 6세~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기존 인정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남은 사람도 모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장애의 정도, 사회활동, 가구환경에 변화가 있어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특별지원급여(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를 신청하는 경우 등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시 재산정됩니다.

Q4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받아야 했던 재판정제도는 폐지됩니다. 다만, 서비스 신청 시에 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경우 장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 아동수당은 2022년 종합조사가 확대적용되기 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Q5

개인사정이 변경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지원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수급자의 신체·정신 기능 상태와 개인의 가구환경(1인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및 사회생활(직장·학교생활)이 변화하는 경우 읍·면·동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필요 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시 재산정됩니다.

Q6

추가급여의 종류와 지원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 사회생활,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였던 추가급여 중 5개 추가급여(독거가구, 취약가구, 직생생활 등)가 활동지원급여로 포함되고, 나머지 3개 추가급여(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는 특별지원급여로서 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때, 특별지원급여의 지원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Q7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중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급여체계 단일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 및 월 상한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인정조사 결과)의 경우 '19년 하반기까지는 종전 본인부담금이 적용되고, '20.1.1.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7. 장애인중심 사례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Q1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란 무엇인가요?

읍·면·동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해 장애인 사례관리를 통해 장애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지기관들이 연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이러한 장애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 전문가, 장애인 복지 제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특성을 보다 세심히 고려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Q2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란 무엇인가요?

선정기준을 충족함에도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과거에 수급 탈락한 장애인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정기적인 확인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에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시]

-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으나 출산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로 가족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때 출산비용을 신청토록 안내
- 장애인연금 수급 중 취업으로 선정기준액이 초과되어 탈락되었으나, 추후 근무시간 축소로 인해 소득액이 감소되어 공적자료(건강보험료) 변동이 있게 되면 장애인 연금을 신청토록 안내

Q3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위기상황의 장애인 및 취약가구 대상 장애인 등을 지차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복지서비스 상담, 안내, 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Q4 맞춤형 상담이란 무엇인가요?

행복e음을 활용하여 장애인 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수급자여부 등 장애인 개별 특성에 따라 이용 불가능한 서비스는 자동으로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안내하고 상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담당자별로 선택적으로 안내하던 방식에 비해 개선된 방식이 적용되면 장애인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 찾아보기 (가나다순)

서비스 찾아보기 (가나다순)

5.18 민주 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 능력 없는 장애인 인정	118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 능력 없는 장애인 인정	117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33	국가직 5, 7급 공채 영어검정시험 대체	75
고용관리 비용지원	74	국립공연 관람료 할인	104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105	국내여객공항 이용료 감면	36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81	근로능력평가 면제	11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5	근로지원인 제도	73
구강 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65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82
국가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편의 제공	79	대한민국 체육 유공자 지정	27
국가 유공자 의료 급여	66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110
		문화바우처사업	105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5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 지원	111	산재보험 유족보상의 연금수급자격 기준	12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111	상속세 상속공제	46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58	소득세 공제	46
발달재활서비스	56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41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86	시·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30
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애 등록시 신체검사 면제	119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108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적용	53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82
보조공학기기 지원 (공무원)	54	아이돌보미 우선 지원	95
북한이탈주민 취업 보호 기간 연장	78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100
사랑의 그린PC 보급	88	언어발달 지원	98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106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8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99	장애수당	25
예방접종 피해 보상	64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95
유선통신 요금 감면	32	장애아 보육료 지원	97
의료분쟁 조정의 직권 개시	115	장애아동 양육수당	98
이동통신요금 감면	31	장애아동수당	26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55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63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49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61
자연휴양림 /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104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특례	77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62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71
장애 검사비 지원	68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75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84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29

장애인 방송 시청 지원	87	장애인 전기 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	113
장애인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119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2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4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90
장애인 보험료 공제	39	장애인 활동지원	93
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 면제	67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59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48	장애인연금	24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11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42
장애인 의료비 공제	39	장애인의료비 지원	51
장애인 일자리 지원	70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35
장애인 자동차 운전교육 지원	101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 공제	4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37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 검사 유예	119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5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47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사업	76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6
점자형 선거공보/주민소환 투표공보/주민투표공보 작성	116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30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85	지역사회중심재활(CBR)	57
정보화 방문교육	102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54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74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108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금	7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43
중증장애인 인턴제	72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34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72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3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76	취업알선 지원	77
중증장애인의 병역면제 및 제2 국민역 처분	120	특별교통수단	92

특수학급 보조인력 배치	86
특허출원료/기술평가청구료 감면	109
활동지원사를 둘 수 있는 장애인 후보자의 범위	88

알기 쉬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기획 및 집필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지원팀

문 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지원팀

대표전화 : 02-3433-0600

홈페이지 : www.koddi.or.kr

주 소 :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5층

I S B N : 978-89-6921-389-1

** 이 책자의 내용은 무단으로 전재, 복제 할 수 없습니다.

